

예산총칙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37,163,856	202,114,916
일반회계	4,469,885,812	134,096,574
일반회계	4,469,885,812	134,096,574
기타특별회계	1,658,081,202	49,742,436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4,649,233	739,477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4,432,796	732,984
경륜사업특별회계	27,813,000	834,3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3,048,665	12,691,460
교통사업특별회계	42,946,410	1,288,39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7,939,453	1,138,184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24,006,740	24,720,20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1,260,000	337,800
기반시설특별회계	7,500,000	225,000
유료도로특별회계	55,361,670	1,660,85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75,474,933	2,264,248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1,362,000	340,860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57,949,284	1,738,479
재정비축진특별회계	7,491,200	224,736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5,612,625	468,379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	11,233,193	336,996
공기업특별회계	609,196,842	18,275,90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1,079,284	8,432,37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1,619,772	6,648,59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6,497,786	3,194,93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786,78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12,581,000천원, 특별회계 110,000,000천원이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